

별첨1

합병계약서의 별첨 존속회사 정관개정안

조문	현행	개정안
제 2 조 [목적]	<p>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·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·경영지도·정리·육성 하는 지주사업 2.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 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3.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,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4. 브랜드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 5. 정기간행물 발행 및 저작권관리업 6. 신기술 사업관련 투자관리 운영사업 및 창업지원 사업 7. 시장조사,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8. 전자상거래 및 시스템컨설팅업 9.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10. 생물원료를 이용한 환경보전적 석유 대체 에너지 연구, 생산 및 판매 11. 환경보전제품인 바이오 디젤 개발, 생산 및 판매 12. 기타 화학제품 생산, 판매 13.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4. 부동산 전대업 	<p>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·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·경영지도·정리·육성 하는 지주사업 2.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 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3. 자회사 등(손자회사, 증손회사 포함)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 4. 다른 회사(자회사 등 제외)의 주식 등 증권의 취득 운용 처분 등의 투자사업 5. 신기술 사업관련 투자관리 운영사업 및 창업지원 사업 6.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,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7. 브랜드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 8. 정기간행물 발행 및 저작권관리업 9. 시장조사,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10. 전자상거래 및 시스템컨설팅업 11.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12. 생물원료를 이용한 환경보전적 석유 대체 에너지 연구, 생산 및 판매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5.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16.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17.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18. 통신판매업 19. 전자상거래업 20. 의료기기 도매업 21. 의료용 기구 소매업 22.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3. 환경보전제품인 바이오 디젤 개발, 생산 및 판매 14. 기타 화학제품 생산, 판매 15. 의약품, 제약원료, 화공약품, 의약부외품, 기초 화합물, 의약품 생산부자재 등의 생산 또는 무역 및 무역대리 16. 장비(기계장치) 및 부분품, 부속품의 도매 및 제조 17. 구매대행업 18. 화장품의 제조, 판매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 상품의 판매 및 도소매 19. 식품의 제조, 판매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 상품의 판매 및 도소매 20.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 이와 관련한 서비스 상품의 판매 및 도소매 21. 화장품, 식품, 건강기능식품 원료 제조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 상품의 판매 및 도소매 22.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23. 통신판매업 24. 화장품 컨설팅 25. 피부관리(에스테틱 샵) 26. 프랜차이즈(가맹점 사업) 27. 뷰티아카데미(학원) 28. 화장품, 건강보조식품, 식료품, 가정용품, 그 외 기타 상품의 통신판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 29. 화장품, 건강보조식품, 식료품, 가정용품, 그 외 기타 상품의 방문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30. 화장품, 건강보조식품, 식료품, 가정용품, 그 외 기타 상품의 제조, 도소매, 중개 및 위탁판매업
--	--	--

		<p>31. 화장품, 건강보조식품, 식료품, 가정용품, 그 외 기타 상품의 전화권유관매업</p> <p>32. 의료기기, 의약품 등의 도소매 및 판매업, 중개업, 통신판매업 및 위탁판매업</p> <p>33. 광고대행업</p> <p>34. 일반음식점</p> <p>35. 휴게음식점</p> <p>36.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및 전대업, 개발업</p> <p>37. 각 호에 관련된 도소매, 무역 및 무역대행업</p> <p>38. 각 호에 부대되는 수출/입 및 판매 및 대리점 업</p> <p>39.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</p>
제 3 조 [본점 소재지 및 지점]	① 회사는 본점을 인천광역시에 둔다.	①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.
제 5 조 [발행예정주식총수]	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천만주로 한다.	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천만주로 한다.
부칙 제 3 조 [시행일]	-	이 정관은 2021년 []월 []일부터 시행한다.